

1. 개정이유
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('20.12.8)에 따라 법률시행(개정 공포 후 6개월)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여,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 실적을 평가·관리하고 포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대장의 임기를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임기로 할 수 있는 규정 마련(안 제10조)

- 1)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이 관할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만료 후 일반대원으로 신분유지 시 조직운영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이를 개선 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나. 의용소방대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개선방안 마련(안 제15조)

- 1) 의용소방대원증 관리를 위해서는 발급 이후 분실, 훼손, 기재사항 변경 시에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다.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·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필요한 기준 마련(안 제20조)

- 1)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·관리 및 포상을 위해서 평가대상 명시, 평가관리 운영방법 명시, 포상의 기준 마련, 평가관리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라.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감사를 임원에서 제외하는 규정 마련(안 제23조)

- 1)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감사를 임원에서 제외하여, 전국연합회 업무 집행 및 예산을 감사하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마. 활동복 규격화를 위한 규정 마련(안 별표6)

- 1) 봉사활동 시 착용하고 있는 활동복에 대하여 전국 공통적인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바. 우천 시 소방활동을 위한 우의 지급 규정 마련(안 별표6)

- 1) 우의는 의용소방대원이 우천 시 화재·구조·구급 등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데 필요한 물품으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사. 기장 규격화를 위한 규정 마련(안 별표6)

- 1) 정복 착용 시 패용하는 기장에 대하여 전국 공통적인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아. 20년 이상 재직한 우수 의용소방대원에게 정복 지급 기준 마련(안 별표6)

- 1) 20년 이상 재직 우수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복지급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자.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필요서류 개선방안 마련(안 별지 제1호서식)

- 1) 의용소방대원 입대 시 대원 관리카드 관리 및 수당지급을 위해 필요서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차. 의용소방대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개선방안 마련(안 별지 제3호 서식)

- 1) 반납일자 및 폐기일자 작성하고 관리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제23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인 대장의 임기는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(분실 또는 훼손, 기재사항 변경을 포함한다.)”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성과중심의 보상)”을 “(성과중심의 포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대상은 법 제7조 및 제13조의 임무로 한다.
- ②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 등을 포함한 전자활동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포상 등은 시·도지사 표창, 의용소방대원 및

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, 국내·외 연수, 포상금 등으로 하되
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- ④ 활동실적 포상 등은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의용소방대
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 조례로
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감사 2명 및 사무총장”을 “사무총장”으로, “부회장 및
감사는”을 “부회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부회장, 감사
및”을 “부회장,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하기 위해 전국연합회 총회에서는 감사 2
명을 선출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 시·도 지역연합회 대표의
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감사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.

별표 6 제1호 제목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☐ 정복
- ☐ 기동복
- ☐ 방한복
- ☐ 조끼
- ☐ 활동복
- ☐ 우의

별표 6 제1호제3호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☐ 직위표장
- ☐ 모자표장(정장, 약장)
- ☐ 지휘장(정복)

☐ 소매표장

☐ 배지

☐ 직위표

☐ 가슴표장

☐ 기장

별표 6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제출서류에 제3호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	제10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 제23조 전국의를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인 대장의 임기는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</u>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신분증명서 등) ① (생략)	제15조(신분증명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<u>경우에는</u>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 <u>경우(분실 또는 훼손, 기재사항 변경을 포함한다.)</u> ----- ----- 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0조(<u>성과중심의 보상</u>)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	제20조(<u>성과중심의 포상 등</u>) ① <u>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대상은 법 제7조 및 제13조의 임무로 한다.</u>
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, 포상기회	②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

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
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
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
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, 관
리 및 보상에 필요한 세부적인
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
다.

<신 설>

제23조(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
구성 등) ① (생 략)

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, 부
회장 2명, 감사 2명 및 사무총장
1명을 임원으로 두되, 회장, 부
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
하고,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
한다.

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 략)
2. 부회장, 감사 및 사무총장의

소방대원 관리카드 등을 포함한
전자활동실적관리시스템을 구
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포상
등은 시·도지사 표창, 의용소
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
장학금, 국내·외 연수, 포상금
등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
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④ 활동실적 포상 등은 제12조
에 따라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
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서 심
의·결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
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제23조(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
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사무총장 -----
----- 부
회장은 -----

---.

③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부회장, -----

임기는 3년으로 한다. ④ · ⑤ (생략) ⑥ <u>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.</u> ⑦ (생략)	-----.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하기 위해 전국연합회 총회에서는 감사 2명을 선출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 시·도 지역연합회 대표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감사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.</u> ⑦ (현행과 같음)
--	--

의용소방대원의 복장 (제14조제1항 관련)

1. 복장의 종류

구분	종류
1. 제복	☐ 정복 ☐ 기동복 ☐ 방한복 ☐ 조끼 ☐ 활동복 ☐ 우의
2. 모자	☐ 정모 ☐ 기동모
3. 부착물	☐ 직위표장 ☐ 모자표장(정장, 약장) ☐ 지휘장(정복) ☐ 소매표장 ☐ 배지 ☐ 직위표 ☐ 가슴표장 ☐ 기장
4. 부속물	☐ 셔츠·넥타이 및 넥타이핀(정복) ☐ 금장단추(정복) ☐ 요대 및 버클 ☐ 이름표 ☐ 등판표시 ☐ 깃표장
5. 신발	☐ 단화 ☐ 기동화

※ 비고: 복장의 세부 규격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2.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

종류			수량	사용 기간	지급대상	비고
제 복	정복	동복	1	6년	대장, 지역대장	부대장은 필요시 지급할 수 있다.
		하복	1	6년	대장, 지역대장	
	기동복	동복	1	3년	의용소방대원	
		하복	1	3년	의용소방대원	
	조끼		1	3년	의용소방대원	
	방한복		1	6년	의용소방대원	
모 자	정모		1	6년	대장, 지역대장	부대장은 필요시 지급할 수 있다.
	기동모		1	3년	의용소방대원	
신 발	단화		1	3년	의용소방대원	
	기동화		1	3년	의용소방대원	

※ 비고

1.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의용소방대 또는 전문의용소방대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제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2.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가 희망하는 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3.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천한 20년 이상 재직한 우수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정복과 정모를 지급할 수 있다.

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		처리기간	30일
사진 (3cm×4cm)	지원의용소방대				
	주소				
	성명		생년월일		
	직장		전화번호		
입대사유 및 신상	입대사유				
	건강상태	키(cm)/몸무게(kg)	혈액형	병역	
학력	연월일	학교명	학과	비고	
경력	기간	단체명(직책)	기간	단체명(직책)	
자격면허	취득일	종류	취득일	종류	
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입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지원자 : (서명 또는 인)

○○소방서장 귀하

제출서류	1. 이력서 1부 2.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증 사본 1부. 3. 사진 2매(3cm×4cm) 4. 통장사본 1매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

[illegible]